

『청구야담(靑丘野談)』에 나타난
암행어사(暗行御史)에 관한 성찰 연구
- 유의(柳誼)의 일화를 중심으로 -

김 경 회*

1. 들어가며
2.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
 - 1) 암행
 - 2) 출두
 - 3) 후일담
3. 암행어사에 대한 성찰 및 개선 제의
4.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청구야담』에 서술된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바탕으로 암행어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야담에 암행어사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암행 단계에서는 수령이 좌수를 관리하기 어려운 지방 통치 제도의 한계와 암행감찰 과정에서의 신분 노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암행감찰을 통해 얻은 정보의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암행어사의 판단의 공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출두 단계에서는 판결에 공정을 기해야 할 암행어사가 접대를 받고 뇌물을 수수하여 죄인의 형량을 경감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셋째, 암행어사 활동을 마친 유의가 공정하지 않은 자신의 판결을

*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 수석연구원(kimkyunghoi76@hanmail.net)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포복절도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암행어사에 대한 당대인의 방관적 자세 또는 무비판적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암행어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기에, 야담의 서술자는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암행어사 유의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통해 암행어사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추론하였다.

* 주요어: 조선 후기, 청구야담, 암행어사, 유의, 성찰

1. 들어가며

왕의 의지가 지방의 지배에 직접 투영된다는 측면에서 왕권 강화의 의미를 갖는 어사(御史) 제도를 통해, 조선은 수령에 대한 감찰을 내실화하고 민정(民情)을 살피 외관제(外官制)라는 지방 통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어사는 파견 목적과 임무에 따라 지방에서 변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건을 진정하는 순무(巡撫)어사, 고향을 떠난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안집(安集)어사, 전결(田結)을 조사하는 균전(均田)어사, 기근이 들었을 때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의 구제 활동을 감독하는 감진(監賑)어사,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는 안핵(按覈)어사,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감시(監市)어사, 육운(陸運)이나 조운(漕運)을 살피는 독운(督運)어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 특히 성종(成宗, 1457~1494)

1)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220쪽; 이상순, 「朝鮮後期 社會變動과 御史制度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쪽; 권영길,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가 현대행정에 주는 의미」, 『한국행정사학지』 53, 한국행정사학회, 2021, 82쪽. 영조(英祖, 1694~1776)와 신하들은 재해 지역에 어사를 보내면서 감진어사라는 명칭은 실효가 없는데 백성의 기대감만 키우고 안집어사도 이름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여 별견(別遣)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조한필, 「조선 영조대 別遣御史의 성격」, 『역사와 담론』 98, 호서사학회, 2021, 131쪽).

시대에 출현하여 명종(明宗, 1534~1567) 시대부터 파견된 암행(暗行)어사는, 비위(非違)의 규찰과 민고(民苦)의 파악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적 활동을 보장받은 어사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670년대부터는 어사의 암행이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어사는 암행어사였다.²⁾

비록 감사(監司)와 도사(都事)의 순력(巡歷)이 있으나, 대로에서 큰소리로 외쳐 번거롭게 열읍(列邑)의 지공(支供)과 역전(驛傳)만 허비할 뿐이고, 그 여리(閭里)의 횡포와 부부(夫婦)의 억울함을 자세히 살필 길이 없으며, 비록 수령이 몹시 부리고 부세(賦稅)를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더라도 빈천한 백성이 감히 상서(上書)하여 발로할 자가 있겠는가? 조정에서 거둬 타이르고 경계한 것은 형식으로 돌아갈 뿐, 백성을 해치는 묵은 폐단은 예전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혹 암행어사가 돈다는 소문을 들으면 큰 고을, 작은 고을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워서 별벌 떨고, 시골의 호부(豪富)한 무리도 모두 숨기에 여가가 없다. 비록 탐장(貪贓)하고 교활한 관리더라도 마침내는 벗어나지만, 한 시대를 진작시키는 것은 어사만 한 것이 없다.³⁾

이익(李穡, 1681~1763)이 말한 바와 같이 어사 제도는 지방을 통치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제도로 평가되었는데, 어사 파견의 목적은 관리의 비위 규찰과 민생(民生) 파악이었기에 감찰 임무에 암행이라는 형식이 필수적이었고, 이 때문에 일반 어사에게도 암행권이 부여되었다. 지방 관리의 부정 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심하게 조사해야 했고, 백성의 고충도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었기에 현장에서 증거를 포착하거나 확인해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⁴⁾

2) 이희권, 「朝鮮後期 暗行御史制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정책」, 『전북사학』 17, 전북대사학회, 1994, 73~75쪽; 이상순, 앞의 논문, 27쪽; 조광현, 「조선후기 암행어사 문서 연구 - 암행어사의 직무수행과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24쪽.

3) 雖有監司都事之巡歷 但呼唱於大路煩費列邑之廚傳 其閭里之橫暴夫婦之冤鬱無緣曲審 守宰縱有虐使橫斂 細民其敢有上書發露者耶 朝家之申複飭厲徒歸虛文 而賊民宿弊依舊不除 或聞暗行之聲 則大郡小邑莫不震恐惕息 委巷武斷亦悉斂避之不暇 雖曰臧獮終亦白脫 然其一時振刷莫御史若也.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권8, 「암행어사(暗行御史)」
(<http://www.itkc.or.kr/>, 검색일: 2022.02.16. 이하 동일).

이러한 암행어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는 부정한 관리에 대한 은밀한 감찰, 천둥이 울리는 듯한 출두, 백성의 묵은 한을 풀어 주는 통쾌함 등이 반영되어 있다.⁵⁾ 예컨대 박래겸(朴來謙, 1780~1842)이 쓴 『서수일기(西繡日記)』에는 암행어사로서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로하는 헌신적이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서술되어 있다.⁶⁾ 또한 고전 소설 「삼쾌정(三快亭)」에는 삼남의 암행어사로 임명된 박성수가 이천 김 진사의 사건, 합천 홍 진사의 며느리 사건, 나주 이 진사의 아들 사건을 해결하고 느낀 세 번의 상쾌함이 묘사되어 있다.⁷⁾ 특히 고전 소설 「춘향전(春香傳)」에 묘사된 것처럼 암행어사 이야기의 통쾌함은 출두에 있으며, 출두 장면은 장관을 이루었다.⁸⁾

그런데 “암행어사 유의(柳誼, 1734~?)가 불법을 자행한 좌수(座首)를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좌수의 아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출두하여 좌수의 죄상을 나열하여 밝힌 후 엄한 형을 내려 멀리 유배를 보냈다.”는 야담(野談)⁹⁾은 위에서 살펴본 암행어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4) 권영길, 앞의 논문, 83쪽. 사실 조정(朝廷)은 어사 제도를 상당한 각오와 엄밀함을 바탕으로 운영하였지만 보고의 결과를 처리하는 정치적 판단을 피할 수 없었다. 즉 어사 제도 자체에 여러 문제나 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감찰의 문제보다 감찰의 결과를 처리하는 조정의 정치적 문제가 더 컸다(이상순, 앞의 논문, 157~158쪽).

5) 오수창, 「암행어사 길 - 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 박내겸의 성실과 혼돈」,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2005, 184쪽.

6) 박영호, 「『西繡日記』를 통해 본 朴來謙의 리더십」,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423쪽.

7) 육재용, 앞의 논문, 228~231쪽.

8) 다만 암행어사가 독자적 감찰만으로 수령을 직접 파직하는 것은 체제의 운영 원리로 보면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었다. 백성 앞에서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고, 많은 경우 수령이 어사보다 품계가 높았기 때문이다. 암행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봉고(封庫)와 사실 보고에 그칠 따름이다. 「춘향전」에 나타난 수령의 파직은 조선의 지배 체제가 붕괴되던 과정에서 어사의 권한이 과장된 것이다(오수창, 앞의 논문, 198~200쪽).

9)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야담집 『계서야담(溪西野談)』과 『청구야담(靑邱野談)』에 실려 있고, 하버드대학교 연칭 도서관에 소장된 야담집 『파수록(罷睡錄)』과 1918년에 편찬된 설화집 『실사총담(實事叢譚)』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본고에서는 『청구야담』의 번역과 원문을 참고하였고 인용 후에는 관련 쪽수만 표기하였다. 이강옥 옮김, 「무당이 굿을 해 주어 큰 화를 면하다(免大禍巫女賽神)」, 『청구야담』 下, 문학동네, 2019, 637~640쪽; 이희준, 유희수·이은숙 옮김, 「12. 암행어사 유의」,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이나 2장 1절에서 비교할 암행어사 관련 야담과는 다른 시선으로 암행어사의 행적을 서술하였기에 주목할 만하다. 암행어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백성의 만족보다는 암행어사 활동의 암면(暗面)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야담과 관련하여 좌수가 화를 면한 것이 무당의 예언 덕분이라고 판단하고 주제를 예언으로 논의한 연구¹⁰⁾, 비현실적 무속을 통해서라도 중앙의 속박과 처벌을 벗어나고자 했던 영남 사람들의 지향을 보여 주었다고 논의한 연구¹¹⁾ 등이 있다. 그렇지만 본 야담에 묘사된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암행어사 임명 및 물품 지급, 암행감찰 및 출두, 복명(復命), 일상 복귀”라는 암행어사의 활동 과정, 암행어사 제도의 가치 및 문제점, 그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본 야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바탕으로 암행어사의 역할 수행 과정과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고찰하고, 야담에 암행어사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기원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는 조선 후기의 암행어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

암행어사가 염찰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한 것인데,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는 외방(外方)의 물정(物情)을 알지 못하여 당연히 포상(褒賞)될 것인데 폄출(貶黜)되거나, 당연히 폄출될 것인데 포상되는 자가 없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암행어사를 반드시 일찍이 수령을 지내고 물정에 아주 익숙한 자로 뽑아서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¹²⁾

2003, 41~42쪽; 김명환·김동진 옮김, 「34화. 아들 덕에 목숨을 건진 좌수」, 『파수록 - 옛 선비들의 심심타파』, 도서출판문사철, 2014, 122~123쪽; 최영년, 김동욱 옮김, 「4. 좌수를 죽이려던 귀신은 바로 나였지[只賴賢郎豈賴巫]」, 『실사총담』 권2, 보고사, 2009, 26~28쪽.

10) 남궁윤, 「〈청구야담〉 서사공간의 특징 고찰」,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98쪽.

11) 박은진, 「야담에 드러난 조선 후기 영남지역 인식 연구」, 『어문연구』 111, 어문연구학회, 2022, 95쪽.

정원(政院)이 [유의가] 서계(書啓) 첫머리에 구사한 말이 격식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여 추고(推考)를 청하였다.¹³⁾

이 평안도 암행어사 유의의 서계를 살펴보면 아뢴 것이 모두 일곱 번이었으나 번란(繁亂)스러워 정연하지 못하고 혼잡하게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수재(守宰)의 치적(治績)에 대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곡포(穀包)에 관한 계목(啓目)도 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 저강(猪糠)이 육분(六分)이고 관계(官鷄)가 일수(一首)라는 말을 살펴보면 기타 나머지 조건(條件)의 번잡하고 잔단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식(啓式)이 격식에 어긋나고 사장(事狀)이 호란(胡亂)스러운 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니, 이것이 어찌 당초에 암행어사를 차견(差遣)한 본뜻이겠는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해당 어사는 우선 함사(緘辭)하여 중중추고(從重推考)하라.¹⁴⁾

야담에 묘사된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분석하기 전에 그가 실존 인물인 사실을 고려하여 그가 어사로 파견된 실상을 사서(史書)를 통해 확인해 보자. 어사로 파견된 자는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젊은 신진기예로 대부분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등의 요직에 있었기에 국정 전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¹⁵⁾ 유복명(柳復明, 1685~1760)이 제안한 것처럼 수령을 역임하여 실무에 밝은 자가 어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1778년에 사헌부의 지평(持平), 1779년에 병조(兵曹)의 정랑(正郎)을 지낸 유의도 1780년에는 강원도의 안핵어사로 1781년에는 평안도의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어사 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

12) 繡衣廉察 事體至重, 而未經守令者 不知外方物情 或不無當褒而貶 當貶而褒者, 臣意則繡衣必以曾經守令 諳練物情者 抄擇差送似宜.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7月 壬戌(27日).

13) 政院 以書啓中頭辭措語 有違格式 請推考也. 『日省錄』 正祖 4年 2月 丙子(27日).

14) 觀此平安道暗行御史柳誼書啓, 啓凡七度 而繁亂不整 棼糅無緒. 守宰治績 語不成說, 穀包啓目 前所未見. 觀於猪糠六分 官鷄一首之說, 而他餘條件之煩屑 推可知也. 啓式之違格 事狀之胡亂 猶屬餘事, 是豈當初差遣之本意也. 失職之罪 在所難免 該御史爲先緘辭 從重推考.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1月 甲申(11日).

15) 권기중,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수령 평가와 재임 실태의 상관성 - 암행어사 書啓와 수령 선생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020, 241쪽.

한 서계가 격식에 어긋나 “봉사(奉使)를 형편없이 한 것은 참으로 온 조정의 수치다.”¹⁶⁾라는 평가를 받아 잠시 체직(遞職)된 행적을 제외하면 어사의 제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였다.

그렇지만 사서에 서술된 유의의 행적과 본 야담에 형상화된 그의 행적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실제 행적과 문학으로 허구화된 행적이 다르더라도 후자가 실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는 후자가 향유자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다.¹⁷⁾ 즉 암행어사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이나 암행어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아니라, 암행감찰을 당하는 입장이나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암행어사의 활동을 조명한 내용이 공감되었기에 야담집과 설화집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인이 공감한 암행어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암행

참판 유의가 암행어사로 영남에 갔다가 진주에 이르렀다. 그곳의 좌수가 네다섯 번이나 연이어 유임하며 불법을 마구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출두하여 그날 그를 때려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읍내로 향한 유의는 십여 리쯤 남았을 때 날이 이미 저물었을 뿐만 아니라 고단하여 뜻하지 않게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¹⁸⁾

본래 향청(鄕廳)의 좌수는 지역 사족(士族) 중에서 선발되어 위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고 아래로 향리(鄕吏)를 단속하여 향촌 사회를 규찰하며 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좌수에 대한 인사 행정을 임진왜란 이후에 수령이 행하면서 좌수는 수령의 보좌역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17~18세기에 향촌의 지배는 사족 지배 체제에서 수령과 이향(吏鄕)의 지배 체제로 변화하여 사족의 향권(鄕權)은 상실되었고,

16) 柳誼之奉使無狀 誠一朝廷之差. 『日省錄』 正祖 5年 2月 丙午(3日).

17) 최향, 「『암행어사』 박문수와 ‘淸官’ 包公의 형상 비교」, 『비교문학』 57, 한국비교문학회, 2012, 156쪽.

18) 柳參判誼以繡衣 行嶺南到晉州. 聞首鄕連四五等仍任 而行不法之事, 期於出道日打殺. 方向邑底 未及十餘里地, 日勢已晚 又有路憊, 偶入一家. 637쪽(번역), 639쪽(원문).

유(儒)와 향(鄕)의 분기(分岐) 즉 사족(士族) 그리고 향족(鄕族)·향품(鄕品)이 분리되어 향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족이 갈수록 향임직(鄕任職) 수행을 기피하였다. 반면 서얼, 요호부민(饒戶富民) 등 위상이 낮은 세력이 좌수를 담당하여 향임의 격이 낮아졌다.¹⁹⁾ 게다가 관찰사가 수십 명의 수령을 규찰하고 통제하는 것은 행정 조직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의 수령은 이무(吏務)나 읍내(邑內) 실정에 어두워서 이향(吏鄕)의 작간(作奸)을 봉쇄하는 것이 어려웠기에 수령, 토호, 이향의 비리와 불법이 자행되었다.²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진주의 좌수가 수년간 불법을 자행한 것은 일차적으로 좌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만, 당시 지방 통치 제도의 한계와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출두하기 전에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었거나 마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어사들은 순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빡빡하고 고단한 일정 속에서 암행감찰을 수행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지급한 물품만으로 암행감찰하며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낯선 기후와 거친 길, 예기치 않은 질병 등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의 이동은 고난의 강행군이었던 때문이다. 암행어사와 수행원이 여러 무리로 나누어 활동하였지만 지방의 백성이나 관리의 의심을 받았기에, 감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행동하기 위해 주로 걸어서 이동했고, 암행어사에게 백성의 생활고 등 지역의 정보를 제공한 자가 해당 지역의 관리에게 보복당할 수 있었기에²¹⁾ 더욱 조심하였다. 유의가 읍내를 십여 리 남겨 놓고 뜻하지 않게 어떤 집에 들어간 까닭은, 암행어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누적된 피로를 풀고 고충을 털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유의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암행감찰을 수행하였을까.

암행어사는 부정을 은폐하려는 관속(官屬)과 질곡을 하소연하려는 백성

19) 김세용, 「조선후기 지방통치정책과 邑號陞降 - 17세기를 중심으로」, 『사림』 46, 수선학회, 2013, 172쪽; 박종현, 「17~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지역 내 위상」, 『지역과 역사』 36, 부경역사연구소, 2015, 178쪽·181쪽.

20) 이희권, 앞의 논문, 88쪽.

21)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 암행어사 일기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47~50쪽; 박동욱, 「박영보의 〈繡斧記程〉 연구」,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회, 2015, 237~238쪽; 권영길, 앞의 논문, 93쪽.

양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 지역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지방관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암행어사에 대한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으며, 타지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리 지어 이동하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암행어사와 수행원이 분산하여 암행하였지만 암행어사의 본색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²²⁾ 암행어사는 파견 지역의 백성과 외모, 말투, 행동거지가 달라서 신분이 탄로 나기 쉬웠으며, 지방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관아에 신고하였다. 또한 관가와 이서(吏胥)들은 한양과 통하였기에 암행어사의 동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²³⁾ 보안상의 이유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을에서 순차적으로 출두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출두하였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두하였다면 실효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²⁴⁾ 만약 영남으로의 암행어사 파견이 누설되었다면, 혹은 유의가 영남의 특정 지역을 순시(巡視)하였거나 암행감찰을 수행하고 출두한 후 진주로 이동하였다면, 혹은 유의나 수행원이 영남 또는 진주에서 낯선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면, 혹은 유의가 수행원과 은밀히 소통하지 않았다면 그의 신분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죄수가 유입하며 불법을 자행한다는 소식을 유의가 들었다는 대목에는 암행감찰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암행감찰은 어사가 출두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비리를 발견하고 민심을 확인하는 단계로 암행어사 임무의 핵심적인 부분²⁵⁾이며,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에서도 암행어사의 역

22) 박영호, 「朝鮮時代 仕宦日記 研究 - 朴來謙의 〈西繡日記〉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66쪽. 암행어사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편지를 통해 수행원들과 소통했기에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었다(오수창, 앞의 논문, 191쪽).

23) 암행어사는 임명 절차에서부터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지만, 대신(臺臣)들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승지를 은밀하게 보내서 명초(命招)하고 봉서를 주어 어사로 임명한 후 어사가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받고 호조에서 여비와 물품을 지급받는 제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권영길, 앞의 논문, 89쪽). 불시에 임명된 암행어사는 목적지로 바로 떠나야 했지만, 어사가 출발할 때 친구들이 송별하는 경우나, 어사가 활동할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각 읍에서 모두 그 소식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오수창, 앞의 논문, 185~188쪽).

24) 박동욱, 「박래겸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온지논총』 33, 온지학회, 2012, 16쪽.

25) 박영호, 앞의 논문, 2010, 66쪽.

할 수행 중 주목할 만한 장면이다. 일례로 『청구야담』의 「홍천읍에서 암행어사가 종적을 드러내다(洪川邑繡衣露踪)」와 「암행어사가 처녀들을 중매해 좋은 일을 하다(作善事繡衣繫紅繩)」에 등장한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백성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본 후에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유의의 행적에는 암행어사 이야기에 응당 있어야 할 과정인 암행감찰을 통한 민심 파악이 전혀 없고 좌수가 자행한 불법이 실체적(實體的)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좌수를 때려죽이겠다는 유의의 결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암행어사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불법과 비리를 감찰한 내용에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지 않고 풍문(風聞)에 의존하거나 길가에서 얻어듣는 것도 있었기에 사실과 판이한 허위 정보를 입수할 위험이 상존²⁶⁾하였고, 암행어사가 지방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 민심을 파악하였더라도 그것은 백성 또는 어사의 자기 검열을 통한 여과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었다.²⁷⁾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유의는 출두하여 좌수를 판결하기 전에 좌수가 유입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판결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 집은 제법 정결하였다. 마루에 오르자 열서너 살 된 동자가 상석으로 맞이하였다. 동자는 사람됨이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종과 말도 잘 대접하였다. 동자는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종을 불러 저녁밥을 준비하게 하였다. 온갖 일을 의젓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인과 같아서 어사는 나이를 묻은 후에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라고 물었다. “이 집은 좌수의 집입니다.” “너는 좌수의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에 가셨느냐?” “읍내 임소에 계십니다.”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하는 것이 자상하고 공경히 삼가는 동자를 보고 유의는 기특하게 여기며 혼잣말로 ‘간악한 좌수에게 이처럼 훌륭한 아이가 있다니.’라고 중얼거렸다.²⁸⁾

26) 어사가 수령을 탄핵하는 것은 다 목격한 데서 나올 수 없고 간혹 풍문으로 인하여 하니,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추궁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체면을 존중해서입니다(御史之彈壓守令 不能盡出於目觀 或因風聞爲之, 雖有失實之事 不爲追咎 蓋尊體面也.). 『朝鮮王朝實錄』 宣祖 32年 5月 壬戌(18日).

27) 박동욱, 앞의 논문, 2012, 26쪽.

다음으로 백성의 억울함이 많을수록 암행어사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백성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인심이 각박하여 암행어사는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웠다.²⁹⁾ 반면 인심이 좋다는 것은 민간의 풍속이 좋다는 것이고, 수령이 선정을 베풀며 백성의 풍속이나 풍습을 잘 순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의를 상석으로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한 집은 불법을 자행한 죄로 때려죽여야 할 죄수의 집이었고, 유의를 접대한 자는 죄수의 아들이었다. 유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암행감찰을 위해 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집에 머무르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이는 유의가 출두 후에 죄수의 불법 자행을 판결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일로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죄수에게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가 감탄하는 장면은 그의 편견을 드러낸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의 사례도 있지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의 사례³⁰⁾를 상기하면 유의의 반응은 다소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2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죄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이해된다. 유의가 암행어사인지 모른 채 죄수 아들이 그를 대접하였다면 죄수 아들의 인품이 돋보이는 장면이나, 유의가 암행어사임을 알고 죄수 아들이 그를 대접하였다면 죄수 아들은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자, 유의를 속이기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이다.

28) 家頗精潔. 升堂 有一十三四歲童子 延之上座. 其作人聰慧 區處奴馬. 使之喂之, 呼奴備夕飯. 人事凡百 儼若成人 問其年 而且問: “是誰之家?” 則答曰: “是座首之家也.” 問: “汝是座首之子乎?” 曰: “然矣.” “汝翁何處去?” 曰: “方在邑內任所矣.” 其應接詳而敬謹, 柳奇愛 獨語于心 曰: “奸鄉有寧馨兒” 云矣. 637~638쪽(번역), 639쪽(원문).

29) 황재문, 앞의 논문, 57쪽; 박동욱, 앞의 논문, 2015, 241쪽.

30) 옥망에 눈이 멀어 입신(立身)을 위해 친척이 모역을 피하였다고 거짓 고변하여 신사무옥(辛巳誣獄)을 일으킨 아버지 송사련(宋祀連, 1496~1575)과 달리, 아들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은 아버지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되었으나 의리를 중시하고 학문을 닦아 뛰어난 인품과 학식을 인정받았다(이종호, 『조선을 뒤흔든 아버지』, 역사의아침, 2008, 13~35쪽). 고전 소설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에서 아버지 위지덕은 탐욕스러운 악덕 상인인 반면 아들 위연청은 곤궁한 백성을 도와주는 의로운 상인이다(탁원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상인 형상과 그 의미 -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91~92쪽).

밤이 되어 유익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깨우는 자가 있어서 놀라 일어나 보니, 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큰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생선, 고기, 떡 등의 음식과 술, 과일 등이 높게 차려져 있었다. 의아하여 “이것이 무슨 음식인가?”라고 묻자, 동자가 “올해 아버님의 신수가 불길하여 반드시 관재(官災)가 있을 거라고 말하기에, 무당을 불러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굿하게 하였고 음식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맛을 보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유익은 웃음을 참으며 맛을 보았다. 오랫동안 굶주려 있었기에 먹고 나니 기운이 살아났다.³¹⁾

선행 연구에서는 위의 대목을 무당이 좌수의 관재를 예언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좌수의 아들은 그 예언의 주체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불길한 신수나 관재를 물리치기 위해 무당을 불러 그에게 굿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좌수의 관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행어사의 파견이 이미 알려졌다면, 좌수가 관재를 피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이 무당에게 굿하게 한 날 암행어사 유익이 우연히 좌수의 집을 들른 것이 아니라, 좌수의 아들이 암행어사를 맞이하여 극진히 대접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암행어사의 파견이나 유익의 신분 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좌수나 주변 사람들의 짐작이나 경계, 또는 좌수의 불안이나 불길한 예감 등에 따른 예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때 좌수의 아들이 좌수가 처한 위기 상황을 관재로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수나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재는 좌수의 불길한 신수에서 비롯된 것이나, 야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좌수가 불법을 자행하였기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좌수가 자행한 불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유익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좌수가 불법 자행의 명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래서 아들은 좌수가 받아야 할 처벌을 지은

31) 至夜就寢 忽有攪之者 驚覺則燈火熒然 前置大卓 魚肉餅餌 酒果之屬 皆高排矣 起而訝之 問：“此何飲食?” 其兒曰：“今年家翁之身數不吉 必有官災云 故招巫而禳之 此其所設也 茲敢接待客主 願少下箸.” 柳忍笑而啗之 久飢之餘 腹果而氣蘇. 638쪽(번역), 639쪽(원문).

죄에 대해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관아의 억압이나 착취로 생기는 재앙으로 말한 것이다. 이는 암행어사 관련 이야기에 나타난 암행어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피지배층의 대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국부적이더라도 암행어사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의 일면을 보여 주기에 의미가 있다. 즉 야담의 내용 전반을 고려하면, 좌수의 아들이 암행어사의 판결을 관아가 일으키는 불행한 변고로 간주한 것은, 암행감찰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 판결의 불공정성과 그에 대한 울분을 하소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벌을 내리는 자는 처벌이 온당하고 생각하지만 형벌을 받는 자는 처벌이 부당하고 생각하는 모순된 상황에 맞닥뜨린 유의가 그 모순의 내막을 알아차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좌수에 대한 처벌을 관재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의가 아들의 대접을 받을 때 지은 웃음이나 2절에 나오는 판결의 내용은 관재의 인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절에서는 웃음의 요인만 살펴보면 유의는 웃음을 참고 대접을 받았는데, 그가 참은 웃음은 아들의 말에 공감한 웃음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실수나 결점을 마주대하였을 때 짓는 웃음이다. 유의는 좌수의 아들이 자신이 암행어사로 파견된 사실을 모른 채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좌수의 처벌은 관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어이없어서 웃은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유발되는 웃음과 유사하다.³²⁾ 또한 그의 웃음은 암행어사 역할 수행 시 쌓인 피로와 긴장이 휴식과 안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안심의 웃음이자,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좌수에 대한 판결의 변화를 내포한 웃음이다.

2) 출두

다음 날 유의는 동자와 이별하고 읍내로 들어가 출두하였다. 그리고 그 좌수를 잡아들여 전후의 죄악을 나열한 후 말하였다. “내가 행차한

32)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6쪽·39쪽·43쪽.

것은 너 같은 자를 때려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제 네 집에 자게 되어 네 아들을 보았는데 너보다 훨씬 나았다. 이미 네 집에서 잤고 너의 술과 음식까지 배불리 먹었으니, 너를 죽인다면 이는 인정이 없는 것이다.” 이어 유의는 좌수에게 엄한 형을 내려 그를 멀리 유배 보내고 돌아왔다.³³⁾

판결은 사회가 갈등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보여 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되 그 과정이 공식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³⁴⁾인데, 유의는 출두하여 좌수의 불법 자행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하였을까. 대개 암행어사는 암행감찰로 관부의 비리를 파악한 상태에서 출두하였고, 출두한 이후에는 관부의 모든 장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관련 죄인들을 심문하였는데 심문은 관정(官庭)에서 죄를 실토하게 하고 다짐을 받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령을 직접 심문할 수 없었기에 이서나 향임과 같은 실무자로부터 수령의 불법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령에 대한 심문은 불법 문서가 포착되고 혐의가 확실해지면 의금부에서 이루어졌다.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하면 암행어사는 관부의 창고를 봉하여 닫고, 수령의 인신과 병부, 창고 열쇠를 몰수하여 정해진 겸읍(兼邑)에 보내고 순영(巡營)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때 죄인을 문초(問招)하여 구두로 진술을 받는 봉초(捧招) 과정에서 암행어사가 이서나 향임을 징치하였다. 이서나 향임의 경우 직책이 세습되었고 그들 간의 혼인으로 인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새롭게 부임한 수령이 백성을 수탈하며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서나 향임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대리하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단기간에 이서나 향임의 부정을 뿌리 뽑고, 이러한 모습을 백성에게 드러내어 그들의 원망을 풀어 주고자 하였다. 왕을 대신해 파견된 암행어사는 이서나 향임이 지역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세력을 이루었더라도 손쉽게 그들을

33) 其翌日 辭而入邑底 出道. 拿入其座首 數其前後罪惡 而仍言曰: “吾之 行次 欲打殺如汝者矣. 昨宿汝家 見汝子 大勝於汝矣. 既宿汝家 飽汝之酒食, 而殺之 非人情.” 仍嚴刑遠配而歸. 638쪽(번역), 639~640쪽(원문).

34) 황인순, 「판결담의 서사구조와 판결하는 주체의 리더십 연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32쪽.

징계할 수 있었기에, 이서나 향임은 암행어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³⁵⁾

그런데 암행어사 유의는 판결할 때 1절에서 좌수의 아들이 말한 관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좌수의 죄악을 나열하였다는 내용은 있지만 정작 그것에 관한 좌수의 진술은 없다. 후자를 고려하면 좌수의 죄악은 좌수의 변론이 없는 즉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좌수 스스로 인정한 불법적 행위가 아닌 일방적 통고(通告)의 성격이 있고, 그렇다면 이는 좌수의 아들이 말한 관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다가 유의는 인정상의 이유로 처음에 결심한 처벌과는 다른 처벌을 좌수에게 내렸다. 출두하기 전에 유의는 좌수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들은 말을 근거로 때려죽이는 것으로 그를 처단하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출두한 후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 좌수를 멀리 유배를 보냈다. 생사(生死)를 기준으로 보면 때려죽이는 것과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은 차이가 크다. 좌수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이 좌수를 때려죽이는 것이었다면 유의는 좌수의 잘못을 일정 부분 덮어 준 것이고, 엄한 형으로 좌수를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이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이었다면 출두 전에 내린 유의의 결단은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었음을 뜻한다. 전자든 후자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암행어사의 사유 또는 판결에 결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는 대접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유의가 좌수의 형량을 감한 문제가 있고, 후자는 만약 유의가 좌수의 아들을 만나지 않고 출두하여 좌수를 처단하였다면 좌수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이는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무겁고 가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의가 출두 전에 내린 결단과 출두 후에 내린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의가 판결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 즉 야담 분량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접대를 받은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좌수의 아들을 만난 유의는 좌수보다 그의 아들이 낫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좌수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아들의 인품이 좌수의 선정, 지역 풍속이나 풍습의 순화 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좌수의 악행과 아들의 훌륭한 인품은 무관하기에, 불법을 자행

35) 조광현, 앞의 논문, 75쪽·85~88쪽.

한 죄수를 공정히 판결해야 할 어사가 아들이 인품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정상 죄수를 관대히 처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상(情狀)을 참작(參酌)할 만한 사유나 죄수가 불법을 자행한 사실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드러났다면 형량의 경감이 가능할 법도 하지만 판결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만약 유의의 판결이 전례로 남는다면 악행을 저지른 부모가 판결을 받을 때 인격을 갖춘 자녀가 사정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며 접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죄수의 아들이 암행어사의 파견 소식을 미리 알고 위기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속이고자 말과 행동을 꾸몄다면 이는 기만적 행위이다.

둘째, 유의는 죄수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만 아니라 술과 음식까지 배불리 먹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에 인정상 죄수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판결 현장에서 암행어사가 뇌물을 받아 선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즉 죄수가 수년간 불법을 자행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유의는 죄수의 훌륭한 아들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죄수를 때려죽이겠다는 결심을 웃음을 참으며 바꾸었고 마침내 죄수의 처벌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암행어사가 죄인 또는 그의 지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인정에 좌우되어 형량을 경감한 부패한 행태이다.

3) 후일담

유의는 매번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렇게 말하였다. “무녀(巫女)가 귀신에게 빌었기에 역시 [죄수를] 죽이지 못했지. 죄수를 죽이려던 귀신이 바로 나였으니 말일세. 나에게 술과 고기를 바치며 빌었으니 화를 면하였네.”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며 포복절도했다고 한다.³⁶⁾

유의는 암행어사 활동을 마친 후 죄수의 처벌에 대해 회상하며 죄수가 화를 면한 사건의 인과성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도 무녀가 예언하였다는 내

36) 柳台每向人道其事曰：“巫女禱神 亦不虛殺。座首之神即我也。以酒肉禱之於我而免禍。”儘覺絕倒云爾。 638~639쪽(번역), 640쪽(원문).

용은 전혀 없다. 다만 좌수가 화를 면한 까닭은 좌수 아들의 부탁을 받은 무녀가 귀신에게 빌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 귀신은 바로 유의 자신이었고 아버지가 관재를 면할 수 있도록 귀신에게 빌기 위해 좌수의 아들이 차린 술과 고기를 자신이 받아먹었기에 좌수를 살려 주었다고 고백하였다. 즉 유의는 2절에서 좌수를 판결할 때 발언한 내용과 유사한 이유를 제시하며 불법을 자행한 좌수를 때려죽이지 않은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파견된 암행어사에게 빌며 뇌물을 주면 죽을죄도 형량이 경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아가 당시 암행어사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에 문제적이다.

더불어 그러한 부조리한 행태를 수궁하며 포복절도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들은 암행어사 유의의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당연시하거나 가볍게 여겼을 뿐, 그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웃음의 성격이나 의미 등은 담화 속 관습과 인물 행위의 관계 속에서 결정³⁷⁾되는데, 유의의 말을 듣고 함께 웃은 사람들은 동질감이 형성된 자들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기들만이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우리라는 소속감을 거듭 확인하고 자기 집단의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다.³⁸⁾ 즉 뇌물을 수수한 암행어사 유의가 인정상 형량을 경감한 것에 동조한 사람들의 포복절도가 일부 지배층의 인식 내지 사회 풍토를 의미한다면, 암행어사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거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제도 또는 한계가 노정된 정책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위정자와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암행어사를 고대한 백성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이다.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권도(權道)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행태를 보인 유의의 행적을, 지배층 및 위정자로서 도리를 다하며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 힘쓴 자들 또는 보다 나은 삶의 영위를 염원한 백성이 접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의 지향점과 거리가 멀기에 그들은 웃기 어려웠을 것이다.

37) 김복순, 「구전소화(口傳笑話)의 웃음과 의미」,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156쪽.

38) 광미라, 「조선전기의 사대부문학과 筆記 - 〈청파극담(靑坡劇談)〉 소재 ‘笑話’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45, 우리한문학회, 2021, 129쪽·133쪽.

그렇지만 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야담은 자못 큰 의미가 있다. 좌수의 아들이 유의가 암행어사인지를 모른 채 대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은 유의와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복절도에는 유의의 눈가림을 알아채지 못한 좌수의 아들에 대한 일종의 폄하, 조롱, 멸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포복절을 통해 암행어사 제도의 한계 또는 암행어사의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금기의 세계가 파열되어 판결 현장에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노출³⁹⁾되었고,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암행감찰에 따른 판결로 인한 억울함, 슬픔, 고통 그리고 일부 지배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억울한 이들의 원한과 고통을 공감하고 죄인이 수치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조선의 유가적 형정(刑政) 인식은 경우에 따라 형정의 집행의 측면에서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고, 교화를 위한 형벌이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가하는 악형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⁴⁰⁾ 그뿐만 아니라 정조(正祖, 1752~1800)의 시대처럼 왕의 주도 아래 심리(審理)가 진행되었더라도 담당 관리의 탐욕 내지 해이 때문에 옥사(獄事)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어 옥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⁴¹⁾ 이러한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암행어사는 죄인을 공정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죄인이나 그 가족이 빌거나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처벌을 가볍게 하였다면 이는 판결 및 형벌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사례이다. 게다가 이는 왕의 의지를 지방의 지배에 직접 투영하여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제도의 운영 취지에도 어긋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의의 판결과 인식에 웃음으로 동조한 사람들의 모습은 지배층

39) 심상교, 「민속극에서 웃음의 의미 연구 - 영남지역 민속극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42,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313쪽.

40) 강혜중, 「『공감역학(共感力学)』의 장(場), 조선후기 판례집의 내러티브」,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421~424쪽.

41) 김경희,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金祖淳)의 문제의식 고찰」,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196쪽.

의 충실한 역할 수행, 백성의 삶의 개선, 공정한 사회의 구현 등을 염원하는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수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인애염명(仁愛廉明)'의 네 글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와 반대여서 고을에 도착하자마자 곧 잔학한 짓을 저지르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것을 주된 일로 삼아 형장(刑杖)이 제도를 넘고 송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게다가 자신을 살찌우고 재산을 늘리는 일을 백방으로 꾀하는 까닭에, 부역이 번잡하여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뇌물이 오가는데도 관리들이 두려워할 줄 모른다. 거기에서 본도는 평소 변화(繁華)한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여색에 빠지고 술에 탐닉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한갓 자기의 사욕만을 멋대로 부리고 있으니, 이 또한 고치기 어려운 병폐이다. 일일이 적발하여 등문하라.⁴²⁾

유의가 1781년에 평안도의 암행어사로 파견되기 전에 받은 봉서(封書)를 보면, 조정은 궁벽한 곳에 사는 가난한 백성의 애로 사항을 듣고 수령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어사를 차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별폭(別幅)에는 근래에 관리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탐묵(貪墨)이 습속처럼 되었고, 뇌물이 오가는데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규정을 위반하는 자들이 많으며, 관리들이 잔학한 짓을 저지르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것을 주된 일로 삼아 형장이 제도를 넘고 송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뇌물을 수수한 암행어사가 인정상 죄인을 선처하였다면, 이는 폐단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암행어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유의의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통찰하지 않았기에 포복 절도한 것이다.

42) 守令最先勉者 卽仁愛廉明四字. 而今也反是 才到官 便以肆虐行私爲主, 刑杖之踰制 訟獄之非理 已成痼弊. 而從又肥己腴產 百端經營, 賦役之煩 而民不聊生 賄賂之行 而吏不知畏. 兼以本道 素稱繁華之地, 其溺于色耽于酒 不恤民隱 徒逞己慾, 又是難醫之癘. 一一摘發以聞. 『弘齋全書』 권39, 「賜關西暗行御史柳誼封書」.

3. 암행어사에 대한 성찰 및 개선 제의

조선 초기에는 사화(士禍)와 당쟁(黨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속된 흉년과 전염병 등으로 백성의 생활은 어려웠고 조선 후기에는 수령, 향리 등이 저지른 부세(賦稅) 비리, 천재지변, 공정하지 않은 송사 처리 등으로 백성의 삶은 피해를 겪었다. 조선은 민정을 살피고 지방 관료와 이서를 감찰하여 폐정(弊政)을 시정하고 민심을 수습하며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암행어사의 우수한 활동이 조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역부족이었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암행어사의 뇌물 수수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은 암행어사 제도의 권능과 실효성의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근래에는 어사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비록 암행이라고 칭하면 서도 관가에 출입하여 술과 고기를 대접받고, 하인들을 풀어 마구 뇌물을 받으니 이렇게 되면 보내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⁴⁴⁾

사헌부에서 경기 어사(京畿 御史) 김준상(金僞相, 1640~?)이 제비 뽑은 고을에 갔을 적에 양식과 노자를 받아내고서는 서계(書啓)하게 되자 칭찬하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파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였다.⁴⁵⁾

암행어사는 왕의 측근 중에서 비밀리에 선발된 관원이 임금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영광의 길이었기에 출셋길로 줄달음쳐 나가는 데 빠뜨릴 수 없는 화려한 길이었으나, 지체 높은 관리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난의 길이었고, 제대로 된 관리라면 사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고통이 한층 강렬해야 마땅한 길이였다. 그렇지만 그 영광과 명예의 길에서도 본분

43) 권영길, 앞의 논문, 84쪽.

44) 但近來御史 多不擇人 雖稱暗行 而出入官家 酒肉爛熳 縱其下人 受賂狼藉 如此則雖遣亦無益矣. 『朝鮮王朝實錄』 宣祖 34年 8月 癸巳(28日).

45) 憲府以京畿御史金僞相 就其拙性之邑, 求覓糧資 而及其書啓 乃有褒譽之言, 請罷其職 上命先罷後推. 『朝鮮王朝實錄』 肅宗 13年 10月 乙亥(30日).

을 망각하고 추악한 탐욕을 행한 암행어사가 드물지 않았다.⁴⁶⁾ 조선의 조정은 관찰사가 진행한 포폄(褒貶)에 나타난 폐단을 보완하고 수령과 이속을 통제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암행어사의 자질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암행어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주밀하지 못하여 관련 지역에 암행어사 파견 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암행어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거나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여 암행 지역의 관리에게 추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심지어 불법과 비리를 감찰하고 시정하기 위해 파견한 암행어사가 어사의 직분을 잃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탐관오리인 경우도 있었다.⁴⁸⁾

본 야담에 묘사된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살펴보면 암행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암행어사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암행어사의 역할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수령이 읍내의 실정에 어두워서 이향의 작간을 봉쇄하기 어려운 당시 지방 통치 제도의 한계로 좌수의 불법 자행이 이차적으로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좌수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백성을 교화하며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근거리에 있는 수령이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파견한 암행어사가 단시일 내에 그것의 사실 여부를 암행감찰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좌수의 불법 자행에 대한 면밀하지 않은 검토나 그에 대한 암행어사의 비합리적 판결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암행어사의 활동 기간이나 비용, 암행감찰의 방법 등 제도 자체의 보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좌수를 임명하는 수령이 좌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방 통치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둘째, 본 야담에서는 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암행어사의 신분 노출과 암행감

46) 오수창, 앞의 논문, 184쪽.

47) 조광현, 「조선후기 暗行御史의 外官 褒貶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304~305쪽.

48) 김정기, 「조선조 지방행정통제와 암행어사제의 역할 및 한계」, 『한국행정사학지』 7, 한국행정사학회, 1999, 202쪽.

찰을 통해 얻은 정보의 사실 여부의 확인 문제는 암행어사 활동의 실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암행어사가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세심히 확인하고 암행어사 파견 관련 정보의 통제 방안, 암행어사 및 수행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두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안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암행어사가 수행원과 함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이는 암행감찰로 형벌을 받는 자가 그 형벌을 관재로 인식하지 않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암행어사가 수행하는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정확한 판단과 공정한 판결이다. 암행어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인 봉초 과정에서 암행감찰을 통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와 죄인으로 지목한 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처벌을 관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죄악의 진위를 판가름해야 했다. 또한 암행어사가 죄인 또는 죄인의 지인이 빌거나 뇌물을 바치며 선처를 부탁하여 형량을 경감한다면, 이는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울분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다. 암행어사는 죄인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이것이 범죄를 법으로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자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행어사가 사명(使命)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질을 갖춘 자를 암행어사로 파견해야 했다.

다음으로 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면, 암행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유익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며 웃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부 지배층의 기강이 해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암행어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서 올바른 암행감찰을 통해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판결로 백성의 한을 풀어 준 암행어사 덕분에 통쾌하게 웃은 백성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즉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

하거나 인재를 선발하여 그로 하여금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암행어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암행어사는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했다. 암행어사 제도의 결함을 방관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안정화하거나 지배 세력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야담은 분량은 적지만 하나의 일화를 통해 암행어사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숙고할 수 있도록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간결하게 묘사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폐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암행어사 제도의 한계 또는 일부 지배층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야담이 파한(破閑)과 함께 권징(勸懲)에 본뜻을 두고 있는 만큼, 암행어사의 자질 부족이나 암행어사 제도의 문제점을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고발하거나 적나라하게 폭로하기보다는 풍간(諷諫)하고 경세(警世)하고 있다. 암행어사 제도의 운영 취지에서 벗어난 언행을 일삼은 암행어사를 포함한 일부 지배층의 모습을 담담히 서술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되 그들을 폄훼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기반성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나아가 지배층 집단을 정화할 것을 넉넉히 요구하고 있다. 흔히 대상에 가치판단을 적용하는 평가의 주체가 평가 대상보다 자신이 낫다고 느끼거나 자신은 그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우월성을 과시하며 합리적인 평가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본 야담의 서술자는 암행어사 제도의 암면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암행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및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 자들, 암행감찰을 당하는 자들의 관점을 고려하여 암행어사 또는 암행어사 제도의 문제점을 대상화하되 희화화하지 않고 당시의 세태를 기록하여, 당대인이 암행어사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감되었기에 동일한 이야기가 『계서야담』, 『청구야담』, 『파수록』, 『실사총담』 등에 실려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일부 지배층이나 백성이 지배 이념이나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사유도 함께 존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위에서 살펴본 「홍천읍에서 암행어사가 종적을 드러내다」나 「암행어사

가 처녀들을 중매해 좋은 일을 하다」에 등장한 암행어사의 행적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유의의 행적은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청구야담』의 서술자는 양자를 대비하여 당대인이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청구야담』에 서술된 암행어사 유의의 행적을 바탕으로 암행어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암행어사 제도 운영의 한계, 암행어사 자질의 문제, 암행어사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 등이 담담히 묘사된 야담에, 암행어사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암행 단계에서는 수령이 좌수를 관리하기 어려운 지방 통치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였고, 유의의 암행감찰 과정에서 신분 노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암행감찰을 통해 얻은 정보의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암행어사의 판단의 공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출두 단계에서는 판결에 공정을 기해야 할 암행어사가 접대를 받고 뇌물을 수수하여 죄인의 형량을 경감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셋째, 암행어사 활동을 마친 유의가 공정하지 않은 자신의 판결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비판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포복절도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암행어사의 운영 취지와 거리가 있는 암행어사에 대한 당대인의 방관적 자세 또는 무비판적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송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고질적 폐단을 답습한 것을 의미하였고 암행어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 야담의 서술자는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암행어사 유의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통해 암행어사 제도를 성찰하고 개선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추론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 『日省錄』 正祖 4年 2月 丙子(27日).
(<http://www.itkc.or.kr>, 검색일: 2022.02.16. 이하 동일)
『日省錄』 正祖 5年 2月 丙午(3日).
『朝鮮王朝實錄』 宣祖 32年 5月 壬戌(18日).
『朝鮮王朝實錄』 宣祖 34年 8月 癸巳(28日).
『朝鮮王朝實錄』 肅宗 13年 10月 乙亥(30日).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7月 壬戌(27日).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1月 甲申(11日).
『弘齋全書』 권39, 「賜關西暗行御史柳誼封書」.
이 익, 『성호사설(星湖僊說)』 권8, 「암행어사(暗行御史)」.

2. 논저

- 강혜중, 「'공감역학(共感力學)'의 장(場), 조선후기 판례집의 내러티브」,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곽미라, 「조선전기의 사대부문학과 筆記 - 〈청파극담(靑坡劇談)〉 소재 '笑話'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45, 우리한문학회, 2021.
권기중,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수령 평가와 재임 실태의 상관성 - 암행어사 책啓와 수령선생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020.
권영길,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가 현대행정에 주는 의미」, 『한국행정사학지』 53, 한국행정사학회, 2021.
김경희, 「〈오대검협전(五臺劍俠傳)〉에 나타난 김조순(金祖淳)의 문제의식 고찰」, 『동방학』 3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6.
김명환·김동건 율김, 「34화. 아들 덕에 목숨을 건진 좌수」, 『파수록 - 옛 선비들의 심심타파』, 도서출판문사철, 2014.
김복순, 「구전소화(口傳笑話)의 웃음과 의미」,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김세용, 「조선후기 지방통치정책과 邑號陞降 - 17세기를 중심으로」, 『사림』 46, 수선사학회, 2013.

- 김정기, 「조선조 지방행정통제와 암행어사제의 역할 및 한계」, 『한국행정사학지』 7, 한국행정사학회, 1999.
- 남궁윤, 「〈청구야담〉 서사공간의 특징 고찰」,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 박동욱, 「박래겸의 암행어사 일기 연구」, 『온지논총』 33, 온지학회, 2012.
- , 「박영보의 〈繡斧記程〉 연구」,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회, 2015.
- 박영호, 「朝鮮時代 仕宦日記 研究 - 朴來謙의 〈西繡日記〉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 「〈西繡日記〉를 통해 본 朴來謙의 리더십」,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 박은진, 「야담에 드러난 조선 후기 영남지역 인식 연구」, 『어문연구』 111, 어문연구학회, 2022.
- 박종현, 「17~18세기 울산지역 향암층의 가문구성과 지역 내 위상」, 『지역과 역사』 36, 부경역사연구소, 2015.
- 심상교, 「민속극에서 웃음의 의미 연구 - 영남지역 민속극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42,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 오수창, 「암행어사 길 - 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 박내겸의 성실과 혼돈」, 『역사비평』 73, 역사비평사, 2005.
-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37, 한민족어문학회, 2000.
- 이강옥 옮김, 「무당이 굿을 해 주어 큰 화를 면하다(免大禍巫女賽神)」, 『청구야담』 下, 문학동네, 2019.
- 이상순, 「朝鮮後期 社會變動과 御史制度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종호, 『조선을 뒤흔든 아버지와 아들』, 역사의아침, 2008.
- 이희권, 「朝鮮後期 暗行御史制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정책」, 『전북사학』 17, 전북대사학회, 1994.
- 이희준, 유화수·이은숙 옮김, 「12. 암행어사 유의」,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 조광현, 「조선후기 暗行御史의 外官 褒貶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52, 한국 고문서학회, 2018.
- _____, 「조선후기 암행어사 문서 연구 - 암행어사의 직무수행과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조한필, 「조선 영조대 別遣御史의 성격」, 『역사와 담론』 98, 호서사학회, 2021.
- 최영년, 김동욱 옮김, 「4. 좌수를 죽이려던 귀신은 바로 나였지[只賴賢郎豈賴 巫]」, 『실사총담』 권2, 보고사, 2009.
- 최 향, 「‘암행어사’ 박문수와 ‘淸官’ 包公의 형상 비교」, 『비교문학』 57, 한국 비교문학회, 2012.
- 탁원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상인 형상과 그 의미 -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 황인순, 「판결담의 서사구조와 판결하는 주체의 리더십 연구」,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 황재문, 「사환일기와 관직생활 - 암행어사 일기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Abstract〉

**A Study on Introspection on Secret Royal Inspector
from 『CheongguYadam』
- Focused on the Anecdote about You Eui -**

Kim, Kyung-Hoi

Analyzing whole process that a secret royal inspector performed his roles on the basis of trace of the past of secret royal inspector You Eui from 『CheongguYadam』, I examined that critical mind that narrator wanted to introspect and reform the secret royal inspector system was reflected in yadam. First, in stage of secret inspection, I searched limitation of the local ruling system that it was difficult that chief supervised jwasu and there was possibility of identification exposure in process of secret inspection. I also discussed that secret royal inspector should ascertain whether information to gain from secret inspection was true or not, and I argued that secret royal inspector should review fairness of judgment on information. Second, in stage of appearance, I considered problems that secret royal inspector who should ensure fairness in judgment received treat and bribe, so reduced punishment of criminal jwasu. Third, I examined facts that You Eui who finished works of secret royal inspector talked his unrighteous judgment as tale of heroism, and people were convulsed with laughing without critical thinking after hearing trace of the past of secret royal inspector You Eui. I recognized onlooker stance or uncritical awareness on secret royal inspector of contemporary through the facts. I inferred that narrator of yadam thought that those problems could decrease effectiveness of secret royal inspector system, so suggested that people should introspect and reform secret royal inspector system through trace of the past of secret royal inspector You Eui in order to improve devastate lives of the people

and realize royal politics.

* Key Words: the Late Joseon Dynasty, CheongguYadam, Secret Royal Inspector, You Eui, Introspection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7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7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
